

'99년도 공정거래 세미나 개최

본 협회는 지난 11월 9일(화)부터 11일(목)까지 충청남도 도고의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99년도 공정거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공정거래제도의 운용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장, 기업결합과장, 경쟁촉진과장, 하도급기획과장의 주제발표와 아주대학교 이규억 교수의 특별강연이 있었고, 회원사 및 비회원사 임직원 총 80여명이 참석하였다. 동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발표 내용

□ 공정거래제도 운용방향 / 송하성 총괄정책과장

새천년 시대에는 세계화와 더불어 지식정보화 사회, 수요자 중심의 경제체제, 승자독점화 사회로의 전환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공정거래제도의 운용방향도 전향적으로 보완·개선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제도의 운용방향은 첫째, 기업구조를 핵심역량 위주로 조정하고, 둘째,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며, 셋째, 소비자 보호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소비자 위주의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하여는 소비자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소비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용을 확대할 것이다. 끝으로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나갈 것이다.

□ 경제력집중억제시책 및 기업결합심사제도 / 손인옥 기업결합과장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상호출자금지제도 및 상호채무보증제한제도 등의 적용대상이 된다.

기업결합은 기업의 소유·지배·경영의 주체를 혁신하여 기업의 생명을 강화 내지 연장시키고, 기업의 생산성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결합은 독과점의

형성과 경제력집중의 심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결합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장치나 공정한 게임룰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과 직접 관련된 제도는 경쟁을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지주회사금지제도, 상호출자금지제도도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기업결합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을 결합수단에 따라 다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의 양수, 합작회사의 설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 김범조 경쟁촉진과장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여기서 “공정”이란 “부당성”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능률적인 경쟁상태를 의미하고, “거래”는 “공정한 경쟁”에서의 경쟁과 같은 포괄적인 의미이며, “우려”는 추상적인 위험성(가능성)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다.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에 있어서는 합리의 원칙이 보다 강조되고, 당면위법행위보다 조리위법행위가 늘어나면서 경쟁저해성의 판단기준이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이의 판단기준은 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하거나 침해되었는지, 경쟁수단이 공정한지, 거래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억압되었는지 등의 여부이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또는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 제도 / 이동규 하도급기획과장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의 보완입법과 특별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도급법은 거래주체의 전체적인 대등성을 전제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과는 달리 국민경제 전체적인 입장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경제법의 하나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호보완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중소기업간의 수직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은 시장실패현상이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치유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려는 것이다.

하도급법의 개정배경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의 상당부분(관공사의 경우 50%~100%)을 현금으로 결제받고도 수급사업자에 대하여는 장기어음으로 교부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자금난 가중과 경영상 애로를 초래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의 결제방식을 개선하였다. 법개정의 주요내용은 첫째,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결제받은 현금비를 이상으로 수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의무화하였고, 둘째,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 및 물품납품대금으로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업체에게 어음을 교부할 수 없게 하였으며, 셋째, 원사업자의 파산,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고, 넷째, 계약

서 등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도록 하였다. 제조위탁의 경우는 하도급업체가 목적물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건설위탁의 경우는 하도급업체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운영실적 평가 및 개선방향 / 이규억 아주대 교수

경제력집중은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적 자원과 활동의 주요부분이 소수의 사적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관리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축적재벌이라고 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이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기업집단은 우리 나라 경제의 성공과 실패 그 자체이며, 따라서 경쟁정책을 위시하여 의미 있는 경제정책은 이들의 존재를 무시하여서는 논의될 수 없다. 여기서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부문은 IMF환란 이후 전개되는 정부의 기업집단관련정책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우리 나라의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을 조감하고자 한다.

기업은 여건변화에 자기합리적으로 반응하는 유기체이므로 재벌개혁에 있어서도 기업과 시장기구의 생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용하면서 정책의 논리와 방향을 합리적이며 확실하게 설정하고 이를 일관성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기업과 재벌, 전문화와 다변화, 기업지배구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 등 여러 문제에 대한 논점을 정리하여 찬반론과 장단점을 이성적·논리적으로 분석한 위에 궁극적으로 재벌을 해체할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개편할 것인가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의 일반적 목표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과정을 올바르게 선택하여야 한다. 재벌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반시장적 발상과 행동이 작용한다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나라가 추구하여야 할 시장경제의 이념에 적지않은 손상을 입히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정책체제가 갖는 장점과 결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좀 더 합리적으로 정책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도상 공정거래법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 일차적 사명이지만 좀더 폭넓고 긴 안목으로 재벌정책 전반을 조율하면서 처벌위주의 행정을 지양하고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와 같은 수준의 연구와 경험의 체계적 측면과 논리의 개발에도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요 토의 내용

▣ 공정거래제도 운용방향에 대하여

- ① 개방시장경제체제에서 공정한 경쟁의 틀이나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더라도 국내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경제력이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에 치중하기보다는 세계적인 기업의 경쟁력보다 열위에 있는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그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 ㉞ 우리 나라는 경제의 규모, 자본축적의 정도, 수출액, 국민의 지적수준 등 제반 경제여건을 종합하여 볼 때 국제경쟁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핵심역량부문에 특화하는 등 경영의 합리화와 혁신을 추구하여 나간다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과거와 같이 정부차원에서 기업들을 온실에서 키우듯이 직접 지원·육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 ㉟ 국제화·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MSA와 같은 지식산업이나 거대한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이 국내시장에 진입하여 한국기업을 지배하고 독과점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방안이나 대책은 무엇인가?
- ㊱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국내의 기업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해외의 선진 금융기관이 국내에 진출하면 우리 금융기관들은 이들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면서 경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간의 관치금융 등 낙후요인을 배제하고 경영의 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촉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경제력집중억제시책 및 기업결합심사제도에 대하여

- ㉞ 현재 기업결합 제한의 대상이 되는 취득회사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규모(1,000억원)는 정해져 있는 반면 피취득회사의 규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대부분의 경우 피취득회사의 규모가 아주 영세해서 기업결합을 하여도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취득회사 뿐만 아니라 피취득회사의 규모도 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기업결합의 신고대상이 되는 취득회사의 규모가 자산총액(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인 것은 너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 규모 역시 상향 조정되어야 하며, 특히 기업결합의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친족이나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너무 넓어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일일이 친족이나 특수관계인의 기업결합에 대해서까지 관리하기가 어렵다. 기업결합규제대상이 되는 친족이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과 기업결합신고대상의 규모를 업종에 따라 완화시켜줄 수는 없는가?
- ㊱ 기업결합시 피취득회사의 규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과 현재 사후신고로 되어있는 기업결합의 신고에 대해 선진국들과 같이 사전신고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업결합의 역외적용에 대해 우리 나라에서도 역외적용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며, 외국에서 행해지는 기업결합중에서 우리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어도 100억원 이상의 외국에서의 외국회사끼리의 기업결합일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 경쟁당국이 심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㉞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하기까지는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였다. 현재 대우자동차와 GMOI 협상중에 있는데 만약 이 협상이 결렬된다면 현대자동차가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 ㊱ 사건으로는 현대자동차가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두 회사의 결합은 아주 복잡하고, 특히 부채탕감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수의사를 가진 회사가 제시하는 부채탕감 규모와 더불어 인수되었을 경우의 양 상황에 있어서 경쟁에 미칠 영향 등의 상관관계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 대구그룹의 계열사들이 워크아웃으로 동일인의 지분이 소각되고 반면 채권단의 지분취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2000년 4월 1일자로 지정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구그룹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 ㉡ 워크아웃이라고 하더라도 동일인과 채권단의 지분이 5대5정도라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 비율이 4대6의 경우라면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분관계가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임원겸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에 대하여

- ㉠ 해외기업이 국내 출판지역이나 대리점의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와 같이 공급자측에서 지역적으로 공급을 제한하여 구매자가 동 제품을 자유로이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구매자측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 ㉡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판매제한이나 지역의 고객으로부터의 요구에 의한 판매도 제한하는 경우 등은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거래에 대한 원매자의 대응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시정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 제도에 대하여

-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에서 '98. 5. 11 이전까지 교부된 어음은 연 12.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할인율이 은행할인율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시중금리와의 괴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할인율의 적용기간을 단기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가?
-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할인율과 시중은행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상업어음할인율과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시중금리는 금융시장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할인율의 고시는 자주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에 있어서 보증금액의 하향조정이나 동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는가?
- ㉡ 지급보증제도는 당사자에 따라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이다. 이 제도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에서도 제도개선안이 제시되어 있고 건설공제조합에서 용역을 주어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도록 하겠다.
- ㉠ 관급공사에 있어서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도급공사하는 경우 동 공사의 대표회사는 B등급이고 여타 회사는 A등급일 때 대금지급보증료를 원가기준으로 공동분담하고 있다. 이런 경우 A등급 회사는 보증의무가 없는가?
- ㉡ B등급인 대표사는 보증의무가 있으나 A등급인 회사는 지급보증 필요없다.
-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전액을 현금으로 받았으며 수급사업자에게도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가?
- ㉡ 종전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결제방식에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금년 4월 1일 이후에 체결된 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결제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 하도급거래 조사를 중소기업청으로부터도 받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이는 불합리한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범위반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에 대한 입증을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조사가 다소 경직될 수 있으나, 중소기업청의 조사는 자율시정을 지도하는 행정지도 차원의 조사로서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사건을 이첩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는 점에서 조사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

❖ 서면 실태조사의 조사항목 불합리

- ㉠ 서면 실태조사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다, 없다'의 단정적인 응답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인 거래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 수급사업자가 부도가 발생하여 부득이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공탁을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행방을 파악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있다"라는 응답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다. 비록 우리는 이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소명을 하고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시하였다거나 몇가지 예를 들어 놓았다더라면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앞으로의 실태조사에서 시정해주기 바란다.
- ㉡ 대량적 서면조사가 처음 시도되고 조사항목 설정 등에 시간이 충분치 못하여 미진한 조사항목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시정토록 하겠다.

❖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자진시정의 기준

- ㉠ 서면실태조사의 결과에 대한 자진 시정조치 등의 통지를 받았는데 향후 이에 대한 처리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수립되는가?
- ㉡ 시정결과를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면 행정지도로서 끝낼 수 있으나,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되어질 경우는 재시정지시 또는 확인조사를 할 수도 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소급적용 문제

- ㉠ 자동차공업협회 및 기계진흥회에서 제시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각 조항을 살펴다 보면 소급적용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소급적용을 하다보면 이미 거래관계가 끝났거나, 기존에 이미 지급한 어음에 대하여서도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등을 모두 지급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돌아오는 것인데 그 비용부담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는가?
- ㉡ 우리도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다. 일단 그런 조항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는데, 확인 후 통보하겠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제도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적용받는데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해도 혜택을 받을 수는 있

는가?

- ㉠ 계약서의 기본을 유지하면서 특약사항을 별도로 첨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검사의 기준 마련 문제

- ㉠ 거래관계에서 매 건별로 검사결과를 통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양이 일정한 제품이나 규격이 정하여진 물품들에 대하여는 검사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맞게 검사하여 통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외관이 자주 변하는 물품이나 공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품들에 대하여서도 그 검사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맞게 검사하고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라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다른 개선방안은 없는가?
- ㉠ 통상적이고 보편적이거나 일률적 기준이 가능한 경우는 계약서 등에 명시를 하고 질문에서처럼 외관이 자주 변한다거나 그 형태가 일정치 않는 제품의 경우나 제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발주서, 작업지시서 등에 명기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검사결과에서 아무런 근거제시 없이 임의로 불합격 처리하는 것이 문제이지, 발주서, 작업지시서 등에 검사기준을 명기하고 그 기준을 토대로 검사를 행한 후 그에 대한 검사의 불합격 처리를 하는 것은 인정된다.

❖ 업에 따른 물품의 판단 기준

- ㉠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에서 그 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 이익을 내기 위하여 활동하는 업은 모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제조위탁 해당여부 판단 문제

- ㉠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제공되는 자동차공구를 예전에는 제조위탁으로 보지를 않았으나, 지금은 하도급으로 보아 과거의 행위로 적용되는가?
- ㉠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공구를 하도급하여 납품받은 경우는 당연히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어느 시점에서 제조위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다.

❖ 건설업에서의 무면허 판단 기준

- ㉠ 동 공종의 면허가 아닌 다른 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처로부터 부적격업체로 판단되어 하도급계약이 취소되어 이를 하도급업자에게 통보하였는데, 1년 뒤에 계약이행청구가 들어왔다, 이러한 경우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가? 그리고 구두로 통지를 했을 경우 그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가?
- ㉠ 건설업 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동 공종의 면허가 아닌 경우는 동 수급사업자는 무면허와 같으므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구두통지도 효력은 있으나, 그 입증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지방 공정거래 교육 실시

본 협회는 지난 11월 16일(화)부터 11월 18일(목)까지 부산 및 경남지역과 광주 및 전남·북지역의 유통업체 및 하도급관련업체와 관련 사업자단체 임직원에게 대한 공정거래 교육을 부산우체국 대회의실과 광주은행 제1연수실에서 각각 실시하였다.



부산 및 경남지역에서는 72개 업체에서 89명이, 광주 및 전남·북지역에서는 71개 업체에서 98명이 참가한 동 교육에는 부산지방사무소의 소비자보호과 임원택 과장과 경쟁과 조성래 과장, 광주지방사무소의 지도과 조규찬 과장과 경쟁과 유중곤 과장이 각각 강사로 초빙되어 공정거래제도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표시·광고법의 주요 내용,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 하도급 거래의 정의 및 법 적용 대상요건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99년 제2차 공정거래모니터 교육 실시

본 협회는 지난 11월 25일(목),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에서 공정거래모니터요원에 대한 '99년도 제2차 교육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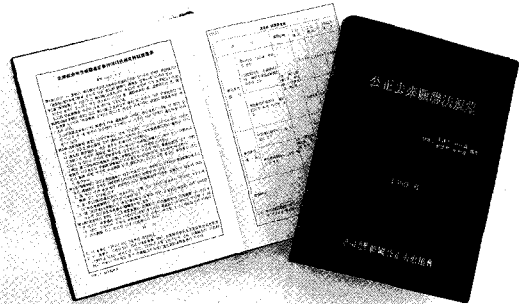
서울, 인천, 경기 및 강원지역 모니터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획과 박재규 사무관, 경쟁촉진과 엄기섭 사무관, 약관제도와 남병호 사무관이 강사로 초빙되어 모니터제도 전반 및 표시·광고법,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와 약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고,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였다.

※공정거래 세미나 및 교육에 관한 문의는 본 협회 기획부(☎775-8870~2)로 하시기 바랍니다.

'99 공정거래관련법규집 발간 안내

본 협회에서는 지난 6월 25일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등 각종 공정거래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한 「99공정거래관련법규집」을 출간하였다.

'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99공정거래관련법규집」은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및 약관법과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관련법과 이에 관련된 고시 및 지침의 개정내용을 모두 수록하였다.

특히 「99공정거래관련법규집」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지침이나 내부자료로만 활용되어 오던 과징금부과세부기준에관한고시와 각 분야별 표시·광고에 관한 지침, 산업자원부로부터 이관되어진 방판매법과 할부판매법, 그리고 올 2월 5일에 공포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약칭 카르텔일괄정리법) 등을 수록함으로써 기업인은 물론 법령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의 활용도가 높도록 하였다.

동 공정거래법규집의 판매가는 25,000원이며, 수록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정거래법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 1)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
- 2) 기업결합신고요령
- 3) 기업결합심사기준
- 4) 지주회사의범위에관한심사요령
- 5) 지주회사의설립전환의신고및지주회사의주식소유현황등보고에관한요령

6) 기업결합신고규정위반사건에대한과태료기준

7) 공동행위및경쟁제한행위의인식신청요령

8) 입찰질서공정화에관한지침

9) 사업자단체활동지침

10)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11)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12)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에관한지침

13)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의기준

- 14) 대규모기업집단의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심사기준
- 15)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
- 16) 국제계약상의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 기준
- 17) 국제계약심사요청요령
- 18)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전절차등에관한규칙
- 19) 법위반사실의공표에관한운영지침
- 2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의한이해관계인등에대한경비지급규정
- 21) 경쟁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 22)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 23) 체납가산금에대한가산금요율고시
- 24)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행위의고발에관한공정거래위원회의지침
- 25) 공정거래위원회소송사전수임변호사보수규정

II. 하도급법

-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 2. 고시·지침 등
 - 1) 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지급시의할인율
 - 2) 제조위탁의대상이되는물품의범위고시
 - 3) 선급금등자연이자지급시의자연이자율고시
 - 4)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고시
 - 5) 하도급자문위원회의유족및운영에관한규정
 - 6)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 7) 과징금부과기준

III. 약관규제법

-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 2. 고시·지침 등

- 1)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유족및운영에관한규정

IV. 표시·광고법

- 1.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 2. 고시·지침 등
 - 1) 표시·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 2) 주택광고에관한심사기준
 - 3) 환경관련표시·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 4) 상가등의분양및임대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 5) 은행등의금융상품표시·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 6) 보험상품표시·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 7) 수상·인증등의표시·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 8)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 9) 통신판매표시·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 10) 주요소득·이익·판매업에있어서의공급자표시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V.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VI.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VII.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 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VIII. 공정거래위원회운영

- 1. 공정거래위원회직제
- 2. 공정거래위원회직제시행규칙
- 3.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절차규정
- 4. 지방사무소업무처리지침

* '99공정거래관련법규집'에 대한 문의 및 구입신청은 본 협회 조사부(☎ 775-8870~2)로 하시기 바랍니다.